

16세기 화폐유통 실상과 그 성격*

— 악포의 유통과 금단책 운영 —

권 인 혁**

목 차

- I. 서 론
- II. 악포의 출현과 유통
 1. 악포의 개념과 유통기반
 2. 악포의 유통확대와 의미
- III. 악포 금단책의 시행과 결과
 1. 악포 금단책의 마련과 시행
 2. 악포 금단책의 변화와 결과
- IV. 결 론

I. 서 론

16세기의 화폐는 제도적으로 5승포·저화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惡布라는 布貨가 유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품질이 나쁘다는 의미를 갖는 이 악포는 단순한 그러한 뜻뿐만 아니라 독자적 의미도 갖고 있었다. 당시 교환경제의 산물로서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일정한 반영해주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화폐였다. 거의 무가치한 短布·2승포의 유통은 기존의 소재가치 증시에서 유통수단 기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악포의 유통은 이러한 사회적 여건 외에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존재할 때 그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기에 전개된 공·사 부문의 5승포 강제와 5승포가 요구되는 공·사 무역의 성행 등은 악포의 재생산, 포화의 升·尺數 감축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 더욱이 조선전기에 진전된 면화 생산기술이 늘어만 가는 포화수요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악포의 유통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 이 논문은 '92학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 인문대학 사학과(Dept. of History,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이러한 상황에서 惡布禁斷을 둘러싼 화폐제 개혁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중 楮·布兼行論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경국대전」과 「대전속록」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제 3차까지의 개정을 통하여 악포를 금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유통계에서의 악포지위는 여전하였고 도리어 악포의 승·척수 감축현상이 더욱 노골화되어 국가에서도 이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布納部門 일부에서 3·4승포 상납이 허용되고 유통수단으로서의 3승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악포 금단책이 동요를 일으키고 실제에 있어서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내용을 달리하는 저·포 검행론과 동전 유통론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은 당시의 현실조건을 감안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악포에 대한 연구는 송재선의 글¹⁾이 자세하다. 물론 이에 앞서 김병하의 글²⁾이 있기는 하지만 半物品貨幣로 규정한 포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에 비하여 전자의 글은 포화의 승·척수 감축현상과 포화 사이의 화폐체제 성립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포화 간의 等價가 승·척수 差率의 증첩계산으로 나타남을 증명하고 악포가 나름대로 화폐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사료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과 부정확한 인용 등이 글의 가치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서두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악포의 개념과 유통기반, 악포의 유통확대와 그것이 지니는 의미 그리고 악포를 금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와 내용상의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문제들은 이 시기의 악포 실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당시의 교환경제 수준을 파악하는데도 일조를 더할 것이다.

II. 악포의 출현과 유통

1. 악포의 개념과 유통기반

16세기의 악포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515년(중종 10)경이다. 당시 시중의 악포는 의복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升數가 매우 성글어 쌀과 면포를 의식자료로 생각하고 있던 위정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비록 포화를 國幣의 하나로 운영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5승포였고 의복을 만들 수 있는 포화였다. 그런데 소재가치가 거의 결여된 악포가 유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의복자료의 낭비·소모 외에 달리 이해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악포 직조자를 制書有違律로 다스리자는 啓請과 의식자료인 쌀·면포 외에 별도의 화폐를 운영하자는 논의가 제기³⁾되었다.

악포는 이처럼 의복을 만들 수 없는 추악한 포화로 추악면포, 추포라고도 불리었다.⁴⁾ 악포의

1) 송재선,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 「변태실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2) 김병하, "이조전기의 화폐유통——포화 유통을 중심으로——", 「경희사학」 2, 1970.

3)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6월 기미조, 임신조.

4)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6월 기미조, 계해조.

실체는 바로 2승포로 1551년(명종 6) 영의정 沈連源, 좌의정 尚震 등의 저·포 검행론에서 확인된다.

羅惡常木固無所用 所當禁絕 如三升綿布則民間猶可以作衣 亦不至回俸之價重 并令參用其於流通貨
遷 大有便益⁵⁾

악포 중에서 3승포 경우는 의복제조가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음을 볼 때, 2승포 이하의 포화가 의복제조에 합당치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2승포 외에 길이가 짧은 短布, 승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3·4승포도 악포범주에 들게 되었다. 단포 경우는 15세기 후반부터 조정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서 빈한한 백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화⁶⁾였다. 이들은 단포로 몇 되의 쌀을 사서 조석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도 그러하였다. 3·4승포 경우는 의복을 만들 수 있는 포화였고 특히 3승포 경우는 「경국대전」에 5승포와의 교환비가 기재⁷⁾될 정도로 국가에서 그 유통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493년(성종 24) 「대전속록」의 반포에 따라 승수 5승, 척수 35척, 폭 7촌⁸⁾에 못미치는 모든 포화는 공·사 행용의 포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의 금단대상이 되게 되었다.

2승포에서 비롯된 악포에 대한 논란은 이제 「대전속록」에서 규정한 포화가 아니면 모두 악포로 취급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대전속록」간행 이후 1515년 사이에 이 규정에 미달하는 포화를 악포로 규정하여 금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短布, 常布, 3·4승포가 유통되는 사실⁹⁾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악포 명칭의 부여와 금단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악포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2승포가 시중에 출현되고 있었다.

일명 瑞慈臺綿布라고 불리는 이 2승포는 1505년(연산군 11)서총대를 축조할 때 役事에 불참한 役卒이 노역 대신 이것을 상납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본인이 입었던 바지의 숨을 빼내 그것을 포화로 직조하여 변상하였는데 이것이 서총대 면포인 것이다. 그러나 이 포화는 품질이 너무 추악하여 그 초기에는 유통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時監役官督赴役民丁 或闕役或役而不准課程 輒徵罰基醜民不能支揭其財產 至絀其弊袴財絮織爲綿布
以償之 布甚醜惡不堪爲用 故流散民間久而不泯 後人名其布曰瑞慈臺 凡市易不得爲售¹⁰⁾

따라서 1515년에 제기된 악포문제는 앞 시기에 출현된 2승포가 점차 그 기반을 넓히고 단포,

5) 「명종실록」 권 12, 명종 6년 9월 임인조.

6) 권인혁, 「15세기 후반 저화제동요와 포화유통」, 「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상), 1992, pp. 799~802.

7) 송재선(1985), 전개논문, pp. 414~415.

8) 「대전속록」 「호전」, 잠령조.

公私行用綿布 升數則五升長則三十五尺廣則七寸以上

9) 「연산군일기」 권 21, 연산군 3년 1월 무진조.

상계서, 권 45, 연산군 8년 8월 기유조.

「중종실록」 권 4, 중종 2년 11월 신유조.

10) 「연산군일기」 권 61, 연산군 12년, 2월 계해조.

3승포 등도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발휘함에 따라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위정자들이 이를 거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악포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나쁜 포화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이 시기의 악포를 이해하는데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한다. 면포가 유통수단으로 계속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승·척수 등에 의하여 포화 상호 간에는 등가가 발생하였다. 이를테면 포화 사이에 화폐체계¹¹⁾가 성립된 것이다. 이 때 값이 낮은 포화가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포화에 대하여 악포로 불릴 수 있고 어느 절대적 기준의 포화에 대하여 그에 못미치는 포화를 악포로 규정¹²⁾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이든지 간에 그러한 뜻의 악포는 역사성이 결여된 일반적 용어이다. 이 시기의 악포는 그러한 일반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독자적 의미가 추가되고 있었다. 비록 유통이 중단되고 있었지만 3·4승포 경우는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상품이며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고 있었고 2승포 경우는 소재가치가 거의 결여된 화폐로서 화폐가 반드시 실물화폐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점차 불식되어 감을 암시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16세기의 악포는 일반적 등가물인 3·4승포와 유통수단 기능만이 강조된 2승포가 서로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임의로 분할, 합성할 수 있는 단포가 존재하여 합성(連尺)되면 일반적 등가물이 되고 분할되면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이 강조되는 포화가 유통되어 이 시기의 화폐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와같이 16세기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화폐가 공존하여 당시의 교환경제가 이전과 다를 것을 시사¹³⁾하고 있었고 장차 한 단계 진전된 화폐(금속·명목화폐)가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악포는 단순한 의미의 악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세기의 교환경제가 당시까지 도달한 수준에서 배출한 화폐로서 이후 전개되는 조선후기의 상품화폐 경제를 맞이하는 과도기의 화폐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악포가 유통될 수 있었던 까닭은 두말할 필요없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¹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토지로부터 이탈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佃戶, 소상인, 소상품 생산자 또는 番上兵의 代立人¹⁵⁾ 등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도시나 지방 場市로 유입된 농민들은 생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화폐로 구입해야만 했고 그것도 그들 생활 수준에 알맞는 소액화폐를 필요로 하였다.

(洪)淑曰立法嚴重可也 而尺准者并皆罪之則市中無物可用 今者中外皆用惡之布 若急迫禁斷則此布

- 11) 이태진, "16세기 동아시아 경제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pp. 102~103. 예는 이 시기의 화폐체계를 은—정포(5승포)—상포(3·2승포)로 설정하고 있다.
- 12)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7월 갑인조.
- 13) 이태진, "16세기 한국사의 이해방향",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pp. 291~292.
- 14) 「중종실록」 권 43, 중종 17년 1월 계유조.
상계서, 권 49, 중종 18년 9월 신미조.
- 15) 이태진, "군역의 변질과 납포제 실시",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pp. 239~249.

終無可用之地也(中略)(南)世準曰今者民間相賣資食者唯此布也 若一朝痛禁小民無以備朝夕之資也¹⁶⁾

악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화폐로서 4승포로부터 3·2승포, 단포 등 다양한 화폐가 존재하여 고액에서 소액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요구를 적절히 해결해주었다.

악포 중 2승포, 단포는 소재가치가 거의 결여된 화폐임에도 하나의 유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것은 화폐에 대신 관념이 소재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것 외에도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증시함에서 초래된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거의 무가치한 악포가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부역의 포납화 경향도 악포유통의 한 기반이 되었다. 賸物 경우는 방납(대납)에 의하여, 身役과 軍役은 자의적인 편의에서 출발하여 후에는 강요에 의해서 포납이 폭넓게 진행¹⁷⁾되었다. 또한 대외무역의 결재수단으로서 포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포화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대일무역에서 포화의 지출 규모¹⁸⁾는 엄청나게 늘어나 1494년(성종 25) 무렵에는 1회 지출량이 무려 1천여 동(5만여 필)에 달하였다. 그래서 그로 인한 국내 포화부족이 심각하게 논의¹⁹⁾되었고 심지어는 국내 포화가 모두 일본으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我國綿布盡歸敵土(日本) 良可痛甚²⁰⁾

포화에 대한 수요증대는 면직지 확대와 면화 생산량의 증가를 동반하였다. 그래서 전국 8도에 면화를 재배하지 않는 곳이 없다.²¹⁾고 할 정도로 그 재배지가 늘어났고 생산량도 위에서 언급한 수요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산량의 증가는 어느 시점에 접어들면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그것은 생산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이 뒷받침해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면화는 백성들의 의복자료로 유용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가의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재배지역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과 생산을 권장하는 재배기술의 보급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전기에 편찬된 農書 중에는 오직 姜希孟 편찬으로 추측되는 「사시찬요초」만이 면화재배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도 너무 소략하여 면화재배를 권장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았다. 비록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북부지방의 면화재배와 관련하여 耕治之法, 種植之法 등이 있기는 했지만²²⁾ 이 또한 앞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16) 「중종실록」 권 40, 중종 15년 윤 8월 계묘조.

17) 이태진(1968), 전계논문, p. 234, pp. 241~253.

18) 김병하, "직물생산과 대일수출", 「이조전기 대일무역연구」, 한국연구원, 1969, pp. 57~59. 이태진(1989), 전계논문, pp. 106~107.

19) 「성종실록」 권 289, 성종 25년 4월 계해조.

「중종실록」 권 54, 중종 20년 4월 무신조.

20) 이재신, "청강선생 후칭쇄어", 「대동야승」 권 57.

21) 이육, "청파극담", 「대동야승」 권 6.

22) 김용섭, 「조선후기 농학사연구」, 일조각, 1988, pp. 92~105.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1988, pp. 286~287.

이처럼 면화재배에 유용했던 기술들이 15세기 후반이후부터는 증가추세의 포화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산량이 담보되고 혹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면화생산은 결국 포화(면포)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포남부문에서의 악포 상납, 유통수단의 악포화를 결과하였다. 이것은 일정량의 포화로 늘어나는 포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응모습이기도 하였다. 특히 포남에서의 5승포 강제는 그 요구가 여의치 못하게 되자 그와 동일한 액수, 그 이상의 악포남정을 유발하여

選上奴子番價 初無定式至於猥濫 故一朔之價初定常木綿五匹猶有猥濫之弊 易以五升木綿三匹今司贖寺收頒也 五升木綿三匹則常木綿乃至於六匹 然則過於五匹之數 請減五升木綿半匹以二匹半²³⁾

포화의 승·척수 감축현상²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와같이 악포의 유통기반은 도처에 산재되어 있었다. 악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존재하였고 소액·소량거래에 알맞게 악포 자체가 나름대로의 화폐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소재가치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부역의 포납화, 대외 무역의 성행 등이 악포유통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포남·대외무역의 진행은 포화 공급량을 훨씬 상회하는 과다한 수요량을 창출하여 포화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면화 생산량의 한계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악포의 재생산과 질적 저하를 촉발하였다.

2. 악포의 유통확대와 의미

악포는 일반적 증가물인 3·4승포와 유통수단 기능만이 강조된 2승포, 단포가 있었다. 3승포 경우는 1403년(태종 3) 무렵 5승포와 더불어 시중에서 유통²⁵⁾되고 있었고 세조 연간에는 그 유통이 활발하여 常布라고도 불리었다.²⁶⁾ 그래서 당시의 「대전」에 中等貨幣로 규정되었고 성종 시 「경국대전」에는 5승포와의 증가도 기록되었다. 2승포는 일명 서충대 면포로 불리은 것으로 연산군 말기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출현 초기에는 시중에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실정²⁷⁾이었고 그 후 점차 차익을 도모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이용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2승포 존재가 낮설지 않게 되었다.²⁸⁾ 단포 경우는 15세기 후반에 널리 유통되었다. 포화의 속성상 분할, 합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액·소량거래에 부응하는 여러 형태와 단포가 출현하였다. 2단, 3단 또는 4단(瑞)이 1필을 이루는 短布²⁹⁾가 나타났던 것이다.

23) 「중종실록」 권 31, 중종 12년 12월 정묘조.

24) 「중종실록」 권 26, 중종 11년 10월 병진조.

상계서, 권 65, 중종 24년 4월 갑오조.

상계서, 권 65, 중종 24년 5월 기미조.

25) 「태종실록」 권 6, 태종 3년 8월 을해조.

26) 「세조실록」 권 21, 세조 6년 8월 을묘조.

27) 「연산군일기」 권 61, 연산군 12년 2월 계축조.

28)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6월 계유조.

상계서, 권 22, 중종 10년 7월 갑오조.

29) 권인혁(1992), 전개논문, pp.799~802.

16세기에는 이러한 악포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지불수단으로서 收贖, 選上價布로서 널리 이용³⁰⁾ 되었다. 비록 악포 금단책이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禁劄을 어기면서까지 이를 이용해야만 하는 백성들이 다수 존재³¹⁾하였고 포납 경우도 악포의 대납이 암묵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의 유통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당시 番上兵의 代立價는 본래 5승포(정포)로 3필이었는데 이것이 7~8필, 30~50필, 100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5승포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악포로 대납했기 때문이다.

번상병 대립가 변동표³²⁾

시 기	대립가 (1개월)	자 료
성종 24년	(정) 3필	○ 「성종실록」 권 278, 24년 윤 5월 신축조. (대립절목)
연산군 3년	(악) 7.5~8필	○ 「연산군일기」 권 28, 3년 11월 기유조
중종 13년	(악) 7~8필	○ 「중종실록」 권 62, 23년 8월 을묘조. 권 88, 33년 9월 경자조
~ 23년	(악) 50필	○ 상계서, 권 62, 23년 8월 계축조
~ 24년	(악) 30~50필	○ 상계서, 권 65, 24년 5월 갑인조
~ 31년	(악) 100필	○ 상계서, 권 81, 31년 1월 정묘조
~ 32년	(악) 150필	○ 상계서, 권 84, 32년 10월 정묘조
~ 36년	(악) 3.5필	○ 상계서, 권 95, 36년 4월 경신조
~ 39년	(악) 60필	○ 상계서, 권 103, 39년 5월 병진조

그리고 국가재정 지출부문에서도 악포가 이용되었다. 兩界지역의 군량미확보를 위하여 국가소유의 악포(상포)를 보내기도 했는데³³⁾ 이것은 악포수납과 더불어 악포유통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악포의 유통은 공간적으로도 확대되었다. 앞서의 포납시책이 그러한 현상을 촉진시키기도 하였고 장시확대, 행상활동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6세기의 장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겨날 정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 또한 무려 수만명에 이를 정도였다. 매달 두번 씩 열리는 장날은 2·3회내지 3·4회로 늘어났고 한 고을에 3·4개 이상의 장시가 열려 한 달 내내 장이 들어서는 상황이 전개³⁴⁾되기도 하였다. 행상활동도 이와 관련하여 장시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장시와 장시 간의 유통권을 매개함으로써 유통차익을 꾀하기도 하였다.³⁵⁾ 이러한 장시와 행상활동을 통하여 악포는 자신의 유통기반을 계속 넓혀갔던 것이다.

30) 「연산군일기」 권 45, 연산군 8년 8월 기유조.

「중종실록」 권 4, 중종 2년 11월 신유조.

31) 「중종실록」 권 54, 중종 20년 7월 신유조.

상계서, 권 55, 중종 20년 10월 무신조.

32) 이 <표>는 이태진(1968), 전계논문, pp.243~247, 내용을 참조, 보완한 것이다.

33) 「중종실록」 권 49, 중종 18년 9월 정축조.

상계서, 권 56, 중종 20년 12월 을유조.

34)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한국사연구회, 1987, pp.43~91.

35) 박병식, 「조선전기의 행상과 지방교역」, 「동방학지」 77·78·79 합집, 1993, pp.343~344.

악포는 이와같이 그 유통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중의 모두가 이를 이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상적인 화폐가 되었고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외방에서는 계속 악포를 직조³⁶⁾하였다. 그래서 흉년을 당하여 常平倉을 이용하려는 백성들이 質穀에 필요한 5승포가 없어서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악포는 여전히 유통되었고 도리어 악포의 승·척수 감축현상이 더욱 노골화되어 현재의 3필이 예전의 1필 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³⁸⁾되었다. 그 뿐 아니라 시중에서는 승수를 따지지 않고 척수만 헤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李符曰惡布不必禁之而須禁其尺短也 近來凡物價受之者 不計其布之蠹惡惟計其長短 故布雖極爲蠹惡 長若准尺則必不厭其受之也³⁹⁾

악포의 길이가 10~20여 척에 불과한 단포가 유통⁴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악포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변화하게 하였다. 악포 금단책이 민폐, 민원 만을 유발하고 별 효과가 없게 됨에 따라 그 정책을 완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비록 일정부분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이제까지 강요한 포납부문에서의 5승포가 馬價 경우는 4승포, 船價 경우는 3승포로도 상납이 가능하게 되었다.⁴¹⁾ 이러한 조치는 대립가 등에서 나타난 악포의 대납현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악포유통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점차 동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중 유통수단으로 3승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我國綿布之用習俗已久不可全廢 蠹惡常木國無所用所當禁絕 如三升綿布則民間猶可以作衣 亦不至回俸之價重 并令參用其於流通質選大有便益⁴²⁾

악포는 국가에서 금단하는 포화로 貨權在上 관념과 거리가 먼 화폐였다. 일찌기 국가에서 楮貨나 동전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그 때마다 포화 사용을 금단하였지만 그러한 기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포화에 대한 기존의 시책을 포기하고 포화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着稅法, 布帛稅, 포화의 척수(35척) 규정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포화에 대한 이러한 통제가 국가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포화가 계속 유통되자 이제는 보다 강력

36) 「중종실록」 권 40, 중종 15년 윤 8월 계묘조.

상계서, 권 55, 중종 20년 10월 계축조.

37) 「중종실록」 권 55, 중종 20년 11월 신사조.

상계서, 권 56, 중종 20년 12월 을유조.

38) 「중종실록」 권 55, 중종 20년 11월 기묘조, 경진조.

39) 「중종실록」 권 65, 중종 24년 4월 갑오조.

40) 「중종실록」 권 55, 중종 20년 11월 기묘조.

상계서, 권 65, 중종 24년 5월 기미조.

어숙권, 「폐관잡기」, 「대동야승」 권 4.

41) 「대전후속록」 「호전」, 세공조.

42) 「명종실록」 권 12, 명종 6년 9월 임인조.

한 규제를 강구하게 되었다.⁴³⁾ 그 결과 「대전속록」에 보이는 승수, 척수, 폭에 대한 통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척수에 대한 통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승수, 폭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포화에 대한 이러한 통제는 화권재상 관념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그 결과는 실통치 않았고 통제에서 벗어난 악포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악포가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유통수단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바뀌어 화폐의 소재·상품가치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3승포 이상의 포화 경우는 소재·상품가치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유통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지만 2승포·단포 경우는 사회적 용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15세기 후반에 그러했듯이 16세기에 들어와서도 단포는 계속 유통되었고 그 외에 2승포 마저 출현하여 널리 통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교환경제가 앞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Ⅲ. 악포 금단책의 시행과 결과

1. 악포 금단책의 마련과 시행

악포의 유통확대는 국가의 貨幣制를 근저로부터 위협하였다.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徵贖에서 楮貨專用, 價買에서의 楮·布 并用이 전혀 준행되지 않고 「대전속록」에서 강제한 5승포 사용도 악포에 그 지위를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화폐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전적으로 무력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나아가 화권재상의 명분이 한낱 허울로만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정자들 사이에는 악포금단과 더불어 화폐제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악포금단을 포함한 화폐제 개혁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楮·布 兼行論이고 다른 하나는 楮·錢 兼行論이다. 전자는 「경국대전」에 근거한 견해로서 가매부문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저·포 병용이 악포금단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악포가 금단될 때까지 저화전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었다.

但價買與布一半用之 則竊惡之布禁斷爲難 自今京外徵贖價買專用楮貨⁴⁴⁾

시중에 유통되는 악포에 대해서는 먼저 악포 값을 산정하고 그것을 저화로 和賣하되 사들인 악포는 양계 防戍軍의 衲衣로 충당하고 또 각도에 저화를 분급하여 악포를 수매할 것과 민간의 악포적조를 엄금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의방에서 상납하는 選上奴 價布의 대부분이 추악했기 때문에 該曹로 하여금 節目을 마련케 하고 사섬시에서 직접 점검, 수납할 것을 아울러 제시⁴⁵⁾ 하

43) 권인혁(1992), 전제논문, pp. 787~803.

44)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6월 임신조.

45) 동 상

였다.

한편 저·전 겸행론은 악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포화의 유통을 일체 금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우선 포화유통을 허용하는 한 저화가 유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다음에는 면포가 화폐로 이용되면서부터 곡물재배 기피와 綿作을 통한 末利追求 현상이 대두되고, 마지막으로 악포유통에 따르는 의복자료의 손모현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화보다 비싼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겸행하면 백성에게 편리하고 민폐도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웠다.

今之楮貨至輕只准升米 質遷交易獨用此幣 似乎太輕厚編累積 又妨致遠恐不便於用也 莫若始鑄銅錢 差貴於楮貨與楮貨并行 而輕重有所相濟此實便民而無弊⁴⁶⁾

이처럼 양 논의는 악포금단에는 서로 일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호 간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주장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형성된 5승포-3승포-2승포·단포의 화폐체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시켜 5승포-저화, 또는 동전-저화라는 화폐체계로 재편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의 교환경제 산물이었던 화폐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발상이었다.

악포금단에서 출발한 화폐제 개혁 논란은 1515년(중종 10) 국왕의 입장 표명으로 정리되었다. 국왕은 본래 이들 주장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저·전 겸행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먼저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立法에는 반드시 폐단이 수반되어 紛擾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그러한 결과 때문에 법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⁴⁷⁾

저·포 겸행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우선 백성의 동향이 포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저화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들 화폐가 겸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다음에는 민간에 포화가 많고 저화가 적기 때문에 저화유통의 곤란과 민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역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大典之法雖可申明 然布重楮輕故久則勢自難行 民間綿布甚多楮幣甚稀 若於徵贖全用楮貨則楮幣亦難 卽備 其弊豈少乎⁴⁸⁾

그러나 양 논자들은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⁴⁹⁾ 특히 저·포 겸행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다만 옛법을 밝히는 것일 뿐 새로운 입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사심시에 쌓여있는 저화를 화매하여 유통하게 한다면 금단하기 어려운 악포를 거두어 들임과 동시에 무용의 저화를

46) 동 상

47)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6월 을해조.

48) 동 상

49)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6월 경진조.

散給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악포로 군사의 衲衣로 제조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왕이 밝혔던 우려를 다소 불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왕도 이 견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⁰⁾ 다만 저·포 검행론자들이 주장한 징속의 저화전용이 현 상황에서 적극 추진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저화행용 시기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지시하였다.

然近來不用楮貨久矣 如用於價買則已 於徵贖若用楮貨則百姓必有難辦之患 定限行用何如定限與否 承旨酌量爲之⁵¹⁾

악포금단과 관련된 화폐제 개혁 논의는 이제 저·포 검행으로 낙착되고 그 구체적 시행 방안이 남게 되었다. 이 방안은 비록 호조에서 마련하였지만 저·포 검행론자인 柳洵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⁵²⁾된 것으로서 楮貨行用節目⁵³⁾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전문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절목은 악포와 관련된 것이 4개 항목으로 그 내용의 대략은 아래와 같다.

- 백성으로 하여금 官에 포화를 바치게 하고 時直(시가)에 따라 저화로 화매한다. 징속의 저화전용 시기는 京中各司 경우에 오는 10월1일부터, 外方各官은 내년(1516년 : 중종 11)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성부에서 이미 악포통용 기한을 정하였지만 이외에도 악포의 准尺(35척) 2필을 정포 1필에 준하도록 한다. 가매 경우는 악포가 금단된 후 포화(5승포)·저화를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병용한다.
- 화매한 악포는 衲衣로 제조한다. 민간에 유통되는 악포는 내년 3월까지 기한하여 통용할 것을 허용했으므로各司·各官의 면포도 이 때까지 사용하도록 한다.
- 악포 직조자와 2·3승 바디를 제조한 匠人 등은 남·녀를 불문하고 造惡米例⁵⁴⁾로 처벌한다.

저화행용절목에 나타난 악포 금단책은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의 내용을 적절하게 혼용한 것으로서 5승포 미만의 포화를 전적으로 금단하고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國幣의 내용(포화·저화)을 취하고 「대전속록」에서는 5승포 통용 강요를 채택하여 저·포 검행의 성공을 기약하고자 하였다.

2. 악포 금단책의 변화와 결과

1515년(중종 10) 7월에 마련된 저화행용절목(악포금단책)은 불과 15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마련되고 당시의 교환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

50) 동 상

51)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6월 신사조.

52)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7월 갑오조의 細註에 의하면 이 절목내용이 柳洵의 주장에 의하여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53) 「중종실록」 권 22, 중종 10년 7월 갑오조.

54) 악미는 쌀에 잡씨거기, 가는 모래를 섞거나 물에 불린 쌀로서 1500년(연산군 6)에 장 1백, 도 3년으로 처벌하였다.

「성종실록」 권 132, 성종 12년 9월 갑술조, 상계서, 권 269, 성종 23년 9월 임진조.

「연산군일기」 권 37, 연산군 6년 3월 병진조.

이 중 후자의 내용이 채택되어 該司·한성부에서 절목을 마련⁷³⁾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2차 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때 악포금단의 시기도 연기되어 1522년(중종 17) 1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⁷⁴⁾되었다.

악포 금단책의 제 2차 개정에서는 악포 직조자, 准尺을 자른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재범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가사변 이외의 장 1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악포를 많이 가지고 斂·散으로 이익을 꾀하는 자에게도 위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⁷⁵⁾하였다. 이렇게 악포 금단책이 강화되면서 악포를 이용하는 백성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소지한 악포를 몰수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장형이나 收贖價를 지불⁷⁶⁾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두 端⁷⁷⁾의 포화에 생계를 걸고 있는 백성들은 의복을 팔아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위정자들은 지난 날의 惡米禁法の 實效를 거론하면서 장기간의 법 시행만이 악포금단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特進官李自堅曰 前者惡米之禁初立法也 民間至爲騷擾及今時則永絕不用 大抵因循成俗則不可一二月內必見其效 當悠久而待之⁷⁸⁾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에서 악포 금단책의 제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은 기존의 금단책 이외에 赦宥에 관한 것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에 慶事가 있을 때 죄인을 석방하는 조치가 사유로서 公·私賤 경우에도 수속가를 지불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악포금단을 어긴 자에게는 종전처럼 처벌할 것과 여인이 범금자인 경우에는 家長을 대신 처벌하자는 내용⁷⁹⁾을 담았다.

이상에서 나타난 악포금단의 범금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1525년(중종 20) 이후는 악포 금단책의 완화, 동요시기로서 악포금단의 強度가 떨어지고 금단 내용도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금단책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악포가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는데에 일차적 요인이 있었고 그 외에 有司의 단속이 허술⁸⁰⁾했다는 점이 상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525년에 발생한 흉작은 악포금단의 변화를 재촉하여 악포 이용자에 대한 이제까지의 속공과 처벌을 오직 收贖(장형 또는 수속가 지불)만 하도록 조치⁸¹⁾하였다.

73) 동 상

74) 「중종실록」 권 44, 중종 17년 2월 경진조.

상계서, 권 46, 중종 18년 1월 임술조.

75) 「중종실록」 권 44, 중종 17년 2월 경진조.

76) 「중종실록」 권 50, 중종 19년 2월 계축조, 신사조.

상계서, 권 51, 중종 19년 9월 신미조.

77) 권인혁(1992), 전계논문, pp. 799~802.

78) 「중종실록」 권 49, 중종 18년 9월 신미조.

79) 「중종실록」 권 49, 중종 18년 10월 기유조.

80) 「중종실록」 권 55, 중종 20년 8월 정미조.

81) 동 상

「중종실록」 권 55, 중종 20년 10월 무신조.

법금자 처벌내용의 변화

시 기	법 금 자	처 벌 내 용
최초 절목 (중종 10년 7월)	악포 직조자 2·3승 바다 제조자	○ 造惡米例 ○ 중종 6년 : 장 1백, 도 3년(수속) ○ 제1차 개정전 : 전가사변(7·8인)
제 1차 개정 (“ 15년 9월)	악포 직조자 2·3승 바다 제조자 단포 제조자 단포 이용자	○ 초범 : 장 1백, 도 3년 재범 : 전가사변
제 2차 개정 (“ 17년 2월)	악포 직조자 단포 제조자 악포 斂散資利者	○ 재범 : 전가사변, 장 1백(수속)
제 3차 개정 (“ 18년 10월)	법금자(남) 법금자(여)	○ 사유에서 제외 ○ 가장을 처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악포의 광범한 유통때문이었다. 이 무렵에는 외방의 악포직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품질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⁸²⁾ 특히 이 시기에는 연이은 흉작으로 토지에서 방출되는 농민들이 상업으로 轉業하고 경중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었다.⁸³⁾ 그리고 국가재정과 민생이 모두 궁핍해져⁸⁴⁾ 악포에 대한 금단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악포 중에서도 오직 단포만을 금단시키자는 의견이 대두⁸⁵⁾ 되기도 하였다.

1551년(명종 6)에 발생한 흉작은 백성들의 생활을 근거로부터 위협하여 열 집 중에 아홉 집이 굶주리는 결과를 초래⁸⁶⁾ 하였다. 쌀나무·꿀·어염·채소·과일 등 소소한 잡물이 예전 같으면 악포로 교환되던 것이 이제는 곡물로만 유통되고 번상병의 범죄수속도 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如薪藪魚塩菜果微物 必握粟而買之 赴番軍卒之犯罪徵贖者 亦皆以米⁸⁷⁾

이러한 현상은 저·포 유통의 강요가 전혀 지켜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화폐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악포금단과 같은 비현실적 조치보다 현실에 토대한

82) 「중종실록」 권 55, 중종 20년 10월 계속조.

상계서, 권 55, 중종 20년 11월 기묘조, 경진조.

83) 「중종실록」 권 56, 중종 21년 1월 계묘조.

84) 「중종실록」 권 58, 중종 22년 3월 을유조, 기축조, 경인조.

85) 「중종실록」 권 65, 중종 24년 4월 갑오조.

86) 「명종실록」 권 12, 명종 6년 9월 갑오조.

87) 동 상

탄력적 조치가 더욱 실질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포 겸행론과 동전 통용론이 대두되었다. 이 중 전자 경우는 지난 날의 그것과 내용을 달리한다. 이전에는 공·사 부문에서의 5승포 유통을 강요하면서 악포를 금단하였는데 이제는 의복제조가 가능한 3승포 경우는 유통수단으로 허용하여 교역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⁸⁸⁾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전보다 한 단계 발전된 대안으로서 「경국대전」 국폐조에 충실한 견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당시에 발생한 면화 흉작으로 실현되기 어려웠고⁸⁹⁾ 대신에 동전 통용론이 즐기 차게 전개⁹⁰⁾되었다.

명종시기에 포화가 회귀해진 것은 면화 흉작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인구증가, 포납확대, 국내 상업과 대외무역의 성행 등은 포화수요를 날로 증대시켜 編作의 확대⁹¹⁾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면화 생산량이 담보되거나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였는데 비하여 포화수요는 급신장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균형이 깨져 포화가 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승포 강요는 어느 의미에서는 한정된 포화의 대부분을 국가가 독점하려는 시도였고 잔여 포화로 유통부문에서의 요구를 해결하도록 한 일종의 횡포였다. 5승포에 대한 강요가 심하면 심할수록 포화의 악포화 현상은 심화되었고 2승포·단포의 유통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면화생산의 증대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특히 이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포화수급의 불균형은 조선전기에 성립된 재배기술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재배기술이 요청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昌平縣開刊」의 刊記가 명시된 「농사직설」과 복각본 「사시찬요」가 간행되었다. 이 농서들은 선조 초 또는 그 이전의 호남지방과 1509년(선조 23) 영남지방에서 간행된 것으로 「新增種綿」과 「種木綿法」을 각각 수록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지역실정에 알맞는 재배기술을 각각 기술하고 있었고, 특히, 「농사직설」 경우에는 면화를 처음으로 생산하려는 농민들에게 매우 유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쉽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면화를 경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⁹²⁾되고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후반의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심화되고 있었던 포화의 부족현상을 타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지역실정에 알맞는 재배기술과 누구나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내용 수록은 이전의 농서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다.

IV. 결 론

16세기의 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유통된 악포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88) 「명종실록」 권 12, 명종 6년 9월 임인조.

89) 동 상

「명종실록」 권 12, 명종 6년 10월 무인조.

90) 권인혁, 「16세기의 저화유통론과 그 배경」, 「건대사학」 8, 1993.

91) 민성기, 「조선면작연구서설」,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1988, pp.305~312.

긴요하다. 이 시기의 악포는 5승포에 못미치는 모든 포화를 일컫는 것으로 3·4승포와 2승포·단포가 해당된다. 전자의 두 포화는 소재·상품가치가 있는 일반적 등가물이었고 후자의 두 포화는 그러한 가치가 거의 결여된 단지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이 강조된 포화였다. 소재가치를 중시하는 기존의 관념에서 볼 때 후자의 경우는 분명히 이질적인 존재였고 그것이 널리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화폐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속성을 달리하는 두 포화가 동시에 혼재해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교환경제 실상이 종전과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고 장차 한 단계 진전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음을 예고해주는 것이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시기의 악포는 단순한 의미의 악포가 아니라 16세기의 교환경제가 배출한 화폐로서 당시의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나가려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악포의 유통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상당수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고액(4승포)에서 소액(2승포·단포)에 이르기까지 악포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화폐체계가 성립되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었고 장시확대, 행사활동, 부역의 포납화, 대외무역의 성행 등은 악포유통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외 모두가 악포를 이용한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외방에서는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악포를 계속 직조하였다. 그러나 날로 증대되는 포화수요는 포화 공급량을 훨씬 상회하여 포화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즉 조선전기에 성립하였던 면화 재배기술이 당시의 포화수요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악포는 그 제한된 포화량으로 말미암아 악포의 재생산과 승·척수 감축현상이 더욱 심화되어갔다. 그 결과 유통계에서는 승수를 불문하고 척수만 헤아려 그 값을 정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포화의 길이도 더욱 짧아져 10여 척 남짓한 단포가 유통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위정자들 사이에는 소재·상품가치가 있는 3승포 경우에는 유통수단으로 허용하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악포의 유통확대는 국가의 화폐제를 근저로부터 위협하여 악포금단을 둘러싼 화폐제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저·포 겸행론과 저·전 겸행론이 주요 내용으로서 양자 모두가 악포금단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천방법에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성립된 5승포-3·4승포-2승포·단포의 화폐체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시켜 5승포-저화, 또는 동전-저화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의 교환경제 산물이었던 화폐체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화권재상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악포금단에서 야기된 논의들은 「경국대전」 「대전속록」 내용을 충실히 따르려는 저·포 겸행론으로 낙착되고 저화행용절목(악포금단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악포금단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졸속 마련에서 빚어진 문제·미비점의 돌출로 말미암아 재 3차까지 가는 개정작업을 통해 악포 금단책을 보완, 강화해야만 했다. 그러나 악포 금단책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여전히 악포를 이용하였고 명종시기에 발생한 대홍작은 화폐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제기된 논의는 저·포 겸행론과 동전 유통론으로 전자의 견해가 채택되었다. 이 저·포 겸행론은 앞서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3승포 유통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악포 금단책의 동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악포금단의 強度가 떨어져 처벌 내용이 대폭 완화되고 있었다.

Summary

The Real Aspects of Currency and Its Special Features in the 16th Century

In-Hyuk Kwon

It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to grasp the true nature of Akpo, the most popular currency in those day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aspects of currency in the 16th Century. The Akpo, which means all kinds of Powhas except 5 Seungpo, consisted of both 3 Seungpo, 4 Seungpo and 2 Seungpo, Danpo. The former two Powhas, having utility and commodity value, were the most popular exchange device, while the latter two Powhas were only used as a device of circulation without having such a utility and commodity value. In view of the established conception of currency being accounted much of the utility and commodity value in those days, the latter two Powhas were surely heterogeneous things. And the fact that such Powhas were used as a popular currency at that time can be a true evidence that the social circumstances were mature enough to accept that kind of currency.